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- 02890호

시행일자 2022. 6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 한시 기준완화 이후 후속조치 관련 안내(보건복지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3463(2022.6.10.)

3.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은 1인1실이 원칙이나, 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따라 제3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(2020.12.10.) 결정을 준용하여 **한시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을 다인실로 허용(2020.12.30.)한 바 있습니다.**

4. 이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반의료체계의 전환 및 코로나19의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다인실이 허용된 음압격리병실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지자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에 안내하고, **의료기관에서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의 안내를 협조 요청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다 음 -

<일반의료체계 전환 후 음압격리병실 후속조치 방안>	
다인실	위기경보 '심각' 단계에 한하여 증설된 다인실은 인정하되, 신규증설은 의료법에 따라 1인실만 허용 ※ 다만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 하향 시, 코로나 병상 운용평가 및 수요예측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1인실 전환계획 수립 및 동 계획에 따른 이행기간 동안 다인실 인정 방안 등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
병상신고	의료법에 따라 병상신고가 누락된 의료기관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에 신고 (~'22.6월까지) ※ (상급종합병원) 병상신고 시 허가병상 수가 변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협의 대상으로 심평원 및 복지부에 신증설 협의 필요(~ '22.6월까지)
병실운영	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상황을 대비하여 의료기관은 입원병상환자 전동계획(다인실)을 마련하여,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에 제출 (~'22.6월까지) * 의료기관 →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보건복지부(의료기관정책과)

※ 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